



「26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」 자격진단 체크리스트 (신혼부부)

- ◆ 본인이 해당하는 신청 구분(유형)을 확인하신 후, 각 항목에 대해 스스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◆ 모든 항목에 '예' 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(하나라도 '아니오' 면 부적격), 항목별 확인 결과가 실제 증빙 서류와 다를 경우, 심사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 및 제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◆ **[지원 제외] 신청자 본인 기준 주택 소유자, 공공임대주택 거주자, 기초생활수급자, 국토부 청년월세 수혜자 등 유사사업 동시 수급자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. (공고문 p.6 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 확인)**
- ◆ **신혼부부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, 모두 탈락 처리됩니다.**
- ◆ 임대인이 부모 또는 배우자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구분	자격진단 항목	발급처 및 확인 방법
자격	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청년이며,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무자녀 부부입니까? -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완료	[가족관계증명서] 대법원 전자기족관계등록시스템 (https://efamily.scourt.go.kr/) 발급
연령	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19세~39세 이하입니까? - 1986.1.1. ~ 2007. 12. 31. 출생자 - 군필자는 병적증명 제출 시 최대 42세까지	[병적증명서] 정부24 발급
거주	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구입니까? - 부부 모두 실제 거주 및 전입신고 필수 -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=신청인 -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등본상 주소 일치 필수 - 청년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	[주민등록등본] 정부24 발급
	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인 동시에 월세 60만원 이하의 집에 거주합니까? -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이나 월세 60만원 초과 시 환산액 합계 90만원 이하도 신청 가능	[환산액 계산] (보증금 금액 X 4.5% ÷ 12개월) + 월세액
계약	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본인 명의 계약서가 있습니까? - 날인이 없는 경우,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을 추가로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	[등기부등본] 인터넷등기소 (www.iros.go.kr) [임대차계약 신고필증]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(https://rtms.molit.go.kr/) >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이력 조회
소득	26년 기준 중위소득 48% 초과 ~ 150% 이하입니까? - 건강보험 상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최근 소득금액증명원상 월 평균 소득으로 확인 -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부양자인 경우(공고일 기준) → 본인 소득 기준 -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(공고일 기준) → 부양자 소득기준	[소득금액증명원] 국세청홈택스 (www.hometax.go.kr) 발급 ** 소득금액증명원 상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(월 평균 소득)이 기준을 충족해야함
재산	신청자 기준 일반재산 1.3억원 이하 및 차량 2,500만 원 미만입니까? - 일반재산: 토지, 건물, 임차보증금, 차량시가표준액의 합산액 - 예금, 적금 등 금융자산은 일반재산에 포함 X - 공동명의 차량도 개인 지분이 아닌 전체 차량가액으로 조회	[차량시가표준액] 국세청홈택스 (www.hometax.go.kr) > 장려금·연말정산·기부금 > 근로·자녀 장려금 > 승용차 가액 조회
이체	최근 3개월('26. 2~4월) 월체 이체 내역이 있습니까? - 이체일자(연월일),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, 월세 금액이 기재된 내역	[이체확인증] 각 은행 앱 발급 (마스킹(별표처리) 없이 전체 표기)